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강선영 · 김기현
성일종 · 구자근 · 박덕흠
신동욱 · 이만희 · 김선교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(이하 “조사기관등”이라 한다)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,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,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4항, 제22조제2항 신설 등).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이 조, 제10조 및 제11조에서 “조사기관등”이라 한다”를 ““조사기관등”이라 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 문서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,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 신청을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.

제23조제3호 중 “제22조제4항”을 “제22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제22조제3항”을 “제2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(이하 이 조, 제10조 및 제11조에서 “조사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,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④ ~ ⑨ (생략)	제9조(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“ <u>조사기관등</u> ”이라 한다---- ----- ----- -----.
제17조(보호조치 신청)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(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<u>위원회</u> 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	제17조(보호조치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・③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제22조(불이익조치 금지 신청) ①
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
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
려가 명백한 경우(공익침해행
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
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
한다)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
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.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제23조(불이익조치 추정) 다음 각
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
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
없이 그 문서와 관련 자료를
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,
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
지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22조(불이익조치 금지 신청) ①

-----위원회 또는 조사기관
등-----
-----.

②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
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
은 지체 없이 그 신청을 위원
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
한다.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
항까지와 같음)

제23조(불이익조치 추정) -----

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 으로 추정한다.	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22조제4항</u> 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 이익조치를 한 경우	3. <u>제22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과태료)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(<u>제22조제3항</u> 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 반하여 자료제출, 출석, 진술서 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	제31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<u>제22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